

제 1595 호

전라남도보

서기 1984년 2월 27일
발행인
전라남도지사
발행소: 광주시 광산동 13
전라남도문화공보담당관실
우편번호 500

목 차

1. 전라남도 규칙 제 1368 호 전라남도 담당관 및 실과규칙중 개정
2. " 훈령 제 639 호 전남지역 종합 상황실 운영 규정
3. " 고시 제 22 호 '84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 제 1 회
추경예산 결정
" " 제 23 호 전라남도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 구간지정
" " 제 24 호 환지계획인가
" " 제 25 호 광주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" " 제 26 호 여수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
4. " " 제 52 호 양식어업 면허 연장허가
" " 제 53 호 수입쇠고기 카트미트 품목허가
" " 제 54 호 사회단체등록
" " 제 55 호 '84 어장이용 개발계획 확정
" " 제 56 호 축산물 작업장 허가변경
o 이웃돕기 성금 및 수해의 연금 결산
o 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중 개정 (정정)
5. 사 령

◎ 순간적인 공사망각 두고두고 후회한다.
◎ 당 신 의 행락모습 아들딸이 지켜본다

규 칙

전라남도 담당관 및 실과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4. 2. 22.

전 라 남 도 지 사

전라남도 규칙 제 1368 호

전라남도 담당관 및 실과규칙중 개정규칙

전라남도 담당관 및 실과규칙중 제 10 항 경찰국

제 44 조 (작전과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4 조 (작전과) 작전과에 전경관리계, 작전계, 종합상황실, 항공 기지대를
두고 각계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훈 령

전남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4. 2. 22.

전 라 남 도 지 사

전라남도 훈령 제 639 호

전 남 지 역 종 합 상 황 실 운 영 규 칙

전남지역 종합 상황실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천재지변, 기타 국민생활의 안정에 관계되는 비 군사적 상황 (이하 “상황”이라 한다)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상황 전파 체제를 전남지역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황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전남지역 종합상황실 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이 별표 1의 상황전파 체계표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기타의 기관 (이하 “관계기관”이라 한다)의 상황실 상호간의 상황전파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종합 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상황전파”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종합상황실과 관계 기관의 상황실 상호간에 별표 1 “상황전파 체계표” 및 별표 2 “기관별 상황전파 사항표”에 따라

그 내용을 전화 전문 모사 전신기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.

제 4 조 (설 치) 전남지역 종합상황실은 전남 경찰국에 시·군 지역 종합상황실은 경찰서에 둔다.

제 5 조 (기능) 종합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(1) 상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
- (2) 파악된 상황의 전파
- (3) 적절한 초동조치 및 처리
- (4) 상황 및 그 전파처리에 관한 기록유지
- (5) 기타, 상황 전파에 필요한 조치의 수행

제 6 조 (운영)

- (1) 종합상황실의 운영은 내무부장관 책임하에 경찰국장 및 경찰서장이 수행한다.
- (2) 종합상황실은 24 시간 유지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- (3) 경찰국장 및 경찰서장은 운영에 필요한 각종의 자제시설, 장비 및 인원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종합상황실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상황전파 및 조치)

- (1) 종합 상황실과 관계기관의 상황실 상호간의 상황 전파는 별표 1 “상황전파체계표” 및 별표 2 “기관별 상황전파 사항표”에 의한다.
- (2) 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은 이 규정이 정하는 비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종합상황실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(3) 제 1항의 상황전파를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“상황

통보서"에 의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통신망 구성)

- (1) 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의 상황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통신망을 구성하여야 한다.

(가) 일반전화 (나) 직통전화 (또는 인터폰)

(다) 모사 전신기

- (2)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통신망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.

제 9 조 (관계기관 직원의 파견근무)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종합 상황실 설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관의 직원을 종합 상황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 10 조 (보 안)

- (1) 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의 상황실을 운영하거나 상황을 전파 처리함에 있어서는 비밀에 관한 사항 기타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안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2) 상황전파 및 처리에 관계된 문서, 자재 및 시설의 취급관리와 상황실 출입자의 통제에 관하여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1 조 (위임 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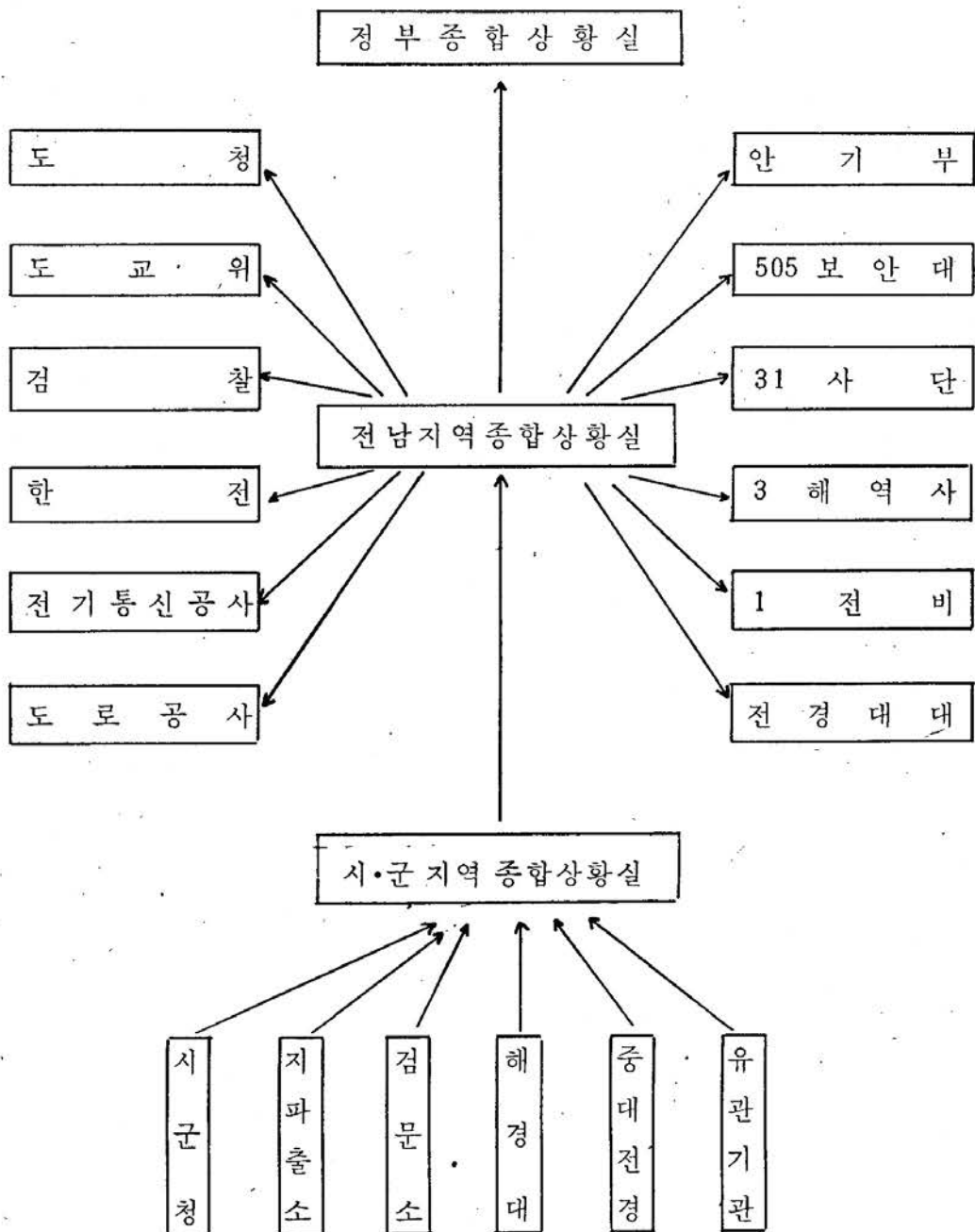
- (1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 장관이 정한다.
- (2) 관계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정의 운용에 필요한 세칙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

상 황 전 파 체 계 도



별 표 2

기 관 별 상 황 전 파 사 항 표

연번	항 목	유 관 기 관
1	경호외 관련된 사항	도청, 안기부, 505, 31사단 및 기타 행정기관
2	천재지변등 재난사항	도청(민방위국), 안기부, 505, 31사, 3해역사, 전기통신공사, 한전, 도로공사 및 기타 해당기관
3	민방위에 관한 사항	도청(민방위국), 안기부, 505, 31사 및 기타 해당기관
4	사회이목 여론대상 사항	도청(공보실), 안기부, 505, 31사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5	항공기 선박등 피납사건	안기부, 505, 31사, 3해역사, 1전비 검찰 및 기타 행정기관
6	항공, 철도, 교통, 선박 및 항만 및 중요사건 사고	안기부, 505, 31사, 3해역사, 1전비, 도로공사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7	중대한 화재, 무기, 폭발물 사건 사고	도청(민방위국), 안기부, 505, 31사, 검찰 및 기타 행정기관
8	관공서, 기타, 국가기관의 방화사건	도청(민방위국), 안기부, 505, 31사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9	중요범죄사건(특별한 보안 및 기밀을 요한 범죄 예외)	도청, 안기부, 505, 31사, 검찰 및 기타 행정기관

연 번	항 목	유 관 기 관
10	각종 대형 안전 사고	도청, 505, 안기부, 31 사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11	국내에 외국기관 및 외국인과 관계된 중요 사항	도청, 505, 안기부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12	집단사태 및 인질난동 사건	도청, 안기부, 505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13	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 사항	도청, 안기부, 505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14	기밀에 속하지 않는 안보 차안 사항	도청, 안기부, 505, 31 사 및 기타 해당기관
15	부처 및 기관장 공통 관계 중요 사항	도청, 안기부, 505, 31 사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16	전염병 난민구호사항	도청 (보사국), 안기부, 31 사, 도교위회 및 기타 해당기관
17	체육시설물피해 및 경 기중 불상사	도청, 안기부, 505, 31 사, 도교위회,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18	기타 전파 필요성이 있는 사항	도청, 안기부, 31 사, 1 전비, 3해역사 검찰 및 기타 해당기관
가. 경찰국장 및 서장은 기관별 상황전파 사항표에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치안본부 종합상황실과 전남지역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. 나. 공휴일 또는 야간에 전남지역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부서 및 기관의 당직에게 전파하여야 한다.		

고 시

전남 고시 제 22 호

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'8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
계 제 1 회 추경예산이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기 고시한다.

1984. 2. 21

전 라 남 도 지 사

세 입 · 세 출 예 산 관 별 조 서

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세 입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
◦ 사업 외 수입	827,000	27,000	800,000
• 새마을성금	800,000		800,000
• 이 월 금	27,000	27,000	—
세 입 합 계	827,000	27,000	800,000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 산 액	기 정 예 산	증 감
◦ 사업 비	827,000	27,000	800,000
세 출 합 계	827,000	27,000	800,000

전라남도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 통행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

1984. 2. 22

전라남도지사 김창식

전라남도 고시 제 23 호

전라남도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 통행구간 지정

전라남도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 통행구간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고시는 도로교통법 제 6 조 1 항에 의하여 도로에 있어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통행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광주시내권을 통행하는 폭발물 고압가스등 적재차량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3 조 (권한의 위임) (1) 경찰서장은 폭발물 및 고압가스 적재 차량의 도심권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라남도 고시에 따라 통행구간을 운행하는 제차량의 교통통제 및 검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.

(2) 전항의 지정 통행구간을 제외한 광주시내권을 통행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의 진입로에는 통행 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통행구간 지정)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시내를 통행할 경우 예상되는 돌발상태에 사전 대비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행구간을 지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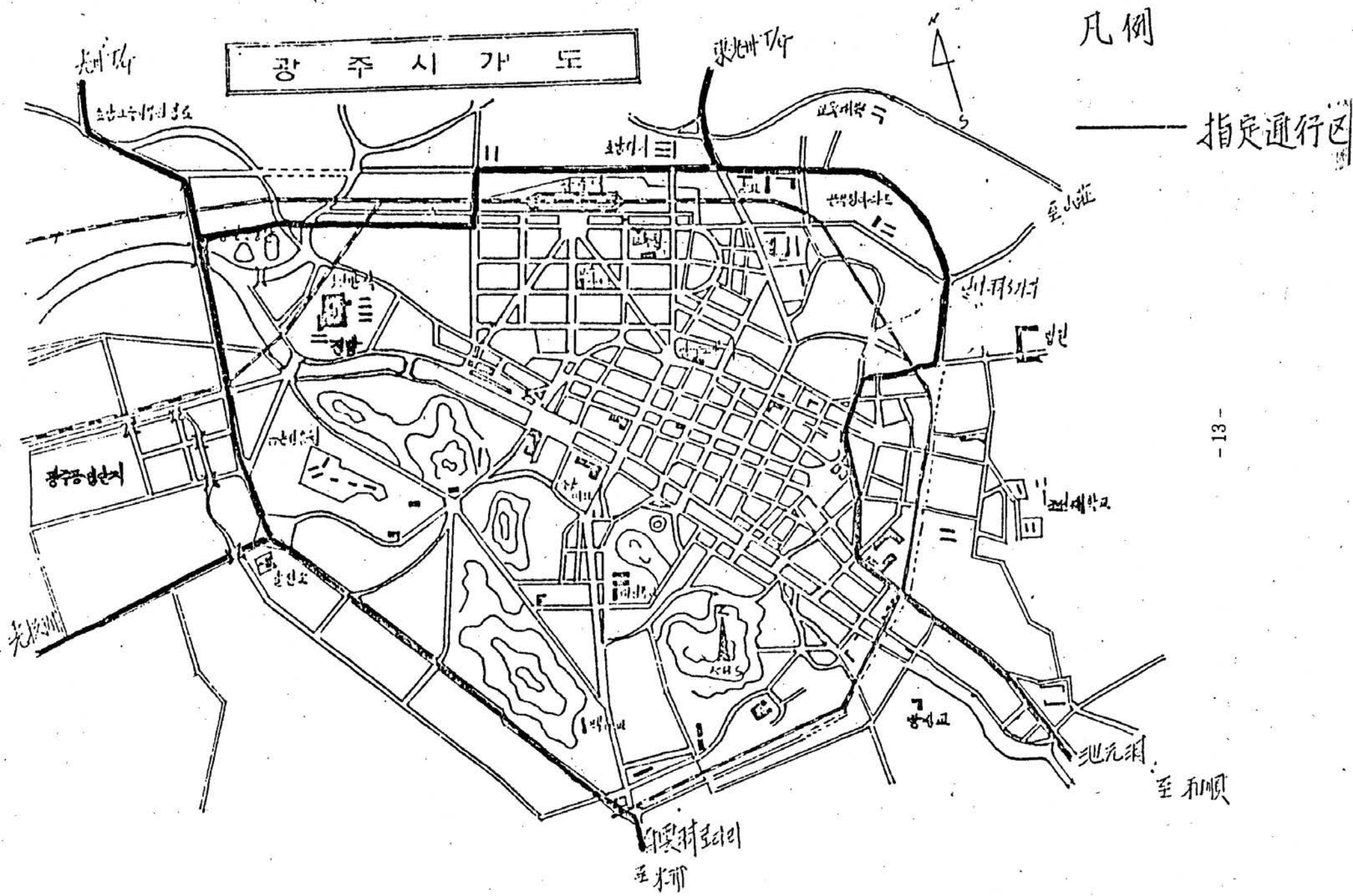
◦ 통행구간 지정 (별표 1 참조)

부 칙

1. 이 고시는 84. 2. 20 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고시 시행후 30 일 이내에 지정 통행구역 및 교통표지를 정비 완료한다.

# 1 통 행 구 간 지 정			
방 면 별	통 행 구 간	로 폭	비 고
◦목포 및 남부선 방면	◦백운동 로타리 - 외곽도로 - 공단 사거리 - 오바브릿지 - 동운동 티/지 - 전대입구 사거리 방면	12~18 m	
◦화 순 방 면	◦지원동 검문소 - 의대로타리 - 동명로 타리 - 농장다리 - 범원 삼거리 - 산수동 오거리 - 서방 사거리 - 사례지 오고교 사거리 - 전대 사거리 - 무등경기장 입구 - 오바브릿지 - 동명동 티/지	6~12 m	
◦광 산 방 면	◦공단사거리 - 오바브릿지 - 동명동 티/지		
◦순 천 방 면	◦동광주 티/지 - 동신고교 앞 - 서방 사거리 - 화순방면 외곽도로 - 사례지오고교 방면	12~18 m	
◦엘·피·지 충전소	◦지정도로 충전소 입구 - 충전소		



전남 고시 제 24 호

경지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을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 127 조에
의거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984. 2. 23.

전 라 남 도 지 사

고 시 내 용

인 가 번 호 : 1984 년도 제 6 호

사 업 시 행 자 : 담 양 군 수

소 재 지 :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, 동산리

토 지 소 유 자 : 314 인

권리가격의 비율 : 103.725734 %

환 지 내 용

종 전 토 지		환 지	
구 분	지 적	구 분	지 적
환 지 지 정	659,514 m^2	환 지 토 지	628,845 m^2
금 정 청 산	15,352		
국유지무상양여	54,689	국유지무상증여	98,045
계	729,555		726,890

전라남도 고시 제 25 호

광주 도시계획시설 (도로 : 중로 1 류 11 호선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, 제 12 조, 제 13 조,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.

관계 도서를 광주시청, 관할구청,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임니다.

1984. 2. 22.

전 라 남 도 지 사

(도로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조서)

구분	등급	류별	호선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
당초	중로	1	11	20	2,750	광주 풍향동 대 1 - 1	광주 문화동 대 1 - 2	결정 : 75.2.18. (건설부고시24호)
변경	//	1	11	20	2,750	//	//	일부선형변경

◦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게재 생략)

◦ 도면은 시청 및 관할구청, 동사무소에 보관. 끝.

전라남도 고시 제 26 호

여수 도시계획 사업 (오동도 진입도로 : 대로 3류 2호선 확장 포장공사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 변경 인가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.

관계 도서를 여주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임니다.

1984. 2. 22.

전 라 남 도 지 사

(실시계획 인가사항)

1. 사업 시행지 : 여주시 수정동 95 번지선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

○ 종류 - 여수 도시계획 사업

○ 명칭 - 대로 3류 2호선 오동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

3. 면적 또는 규모

구 분	연 장 (m)	폭 원 (m)	면 적 (m ²)
총 규 모	1,250	25	31,250
기 시 행	270	25	6,750
금회시행 · 당초	140	25	3,500
· 변경	165	25	4,125

4. 사업 시행자의 주소 성명 : 여수시 관문동 299번지

여수시장 — · 당초 : 김 선 규

· 변경 : 박 일 출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○ 착수 — 83. 7. 8.

○ 준공 — · 당초 : 83.9.30.

· 변경 : 84.3.31.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세목 조서 : 생략 (매수 완료)

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게재 생략)

도면은 시청 및 동사무소에 보관함. 끝.

공 고

전남 공고 제 52 호

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.

1984. 2. 22.

전 라 남 도 지 사

면허번호	양식물	어업권자주소	성 명	어장위치	면 적	연장기간	비 고
여천양식 제 338 호	새 고막	여수, 동산 49-1	황종인	여천, 소라 사곡	70,000	84.4.13 ~ 94.4.12	
제1종공동 제 1022 호	미역외 9 종	여천, 돌산, 죽포 두문 170	어촌계장 황경선	여천, 돌산 죽포, 두문		84.5.13 ~ 94.5.12	
고흥양식 제 167 호	새 고막 피조개	고흥, 점암, 여호 215	최정동	고흥, 과역 백일, 진지	300,000	84.3.11 ~ 94.3.10	
" 제 171 호	"	보성, 벌교 894	김의남	보성, 벌교 장도	200,000	84.3.22 ~ 94.3.21	
" 제 168 호	"	승주, 별량, 마산 492	정종구 외 3	"	69,300	84.3.16 ~ 94.3.15	

전라남도 공고 제 53 호

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조 규정에 의거 다
음 축산물 가공장 품목 허가하였기 공고함.

1984. 2.

전 라 남 도 지 사

1. 작업장명 : 한국냉장(주) 축산물 가공장

2. 소재지 :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44-7

3. 품 목 명 : 5개 품목

가. 카트미트 (수입쇠고기 포장육 - 등심구이)

나. " (" - 장조림)

다. " (" - 분쇄육)

라. " (" - 국거리)

마. " (" - 갈 비)

4. 허가일자 : 84. 2. . 끝.

전라남도 공고 제 54 호

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제 3조 1 항, 제 4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도에 등록된 사회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1984. 2. 25.

전라남도지사

1. 등록번호 : 제 63 호
2. 단체명칭 : 광주 시립극단 후원회
3. 소재지 : 광주시 동구 광산동 73-1
4. 대표자 성명 : 강 태 수
5. 대표자 주소 : 광주시 동구 동명 2 동 200 - 58
6. 조직년월일 : 84. 2. 8
7. 등록년월일 : 84. 2. 25

전남공고제 55 호

농수산부령 제 665 호 제 7 조 규정에 의거 '84 년도 어장이용 개발 계획 확정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단 지신벌, 승인도면은 생산과 및 군도면을 참조할 것.

1984. 2. 25.

전 라 남 도 지 사

양식어업시군별품종별확정명세

(단위 : ha)

시군별	품종별	확정	비고
합 계		5,392.81	
목 포	소 계	40.	
	김 망 홍 식	40	
여 수	소 계	22	
	새 꼬 막	20	
	어 류 축 양	2	

시 군 별	품 종 별	확 정	비 고
광 양	소 계	515.2	
	굴 송 지 식	241.9	품 종 변 경
	새 꼬 막	159.7	//
	김 망 홍 식	113.6	//
여 천	소 계	813.89	
	굴 수 하 식	443.89	품종변경 159 ha 포함
	새 꼬 막	281.	'84 증식사업지구및품종변경 151.35ha포함
	우 령 쉼 이	10.	'84 증식사업지구 포함
	패 류 축 양	1.	'84 증식사업지구
	어 류 축 양	8.	//
	김 부 류 식	20.	
	김 망 홍 식	50.	
승 주	소 계	428.72	
	꼬 막	6.44	
	가 무 락	15.	
	새 꼬 막	405.28	품종변경 358.65 ha포함
	어 류 축 양	2.	
고 홍	소 계	806.	
	굴 수 하 식	85.	
	꼬 막	20.	'84 증식사업지구
	가 무 락	50.	품 종 변 경
	새 꼬 막	140.	'84 증식사업지구 포함

	우렁 쉼 이	6.	'84 증식사업지구 포함
	패 류 축 양	1.	"
	어 류 축 양	4.	"
	김 부 류 식	300.	
	김 망 홍 식	200.	
보 성	소 계	195.	
	꼬 막	30.	'84 증식사업지구
	가 무 락	15.	
	새 꼬 막	150.	'84 증식사업지구및품종변경 86 ha 포함
장 흥	소 계	420.	
	꼬 막	10.	'84 증식사업지구
	새 꼬 막	10.	"
	김 부 류 식	100.	
	김 망 홍 식	300.	
강 진	소 계	442.	
	꼬 막	20.	'84 증식사업지구
	새 꼬 막	20.	
	어 류 축 양		
	김 부 류 식	100.	
	김 망 홍 식	300.	
해 남	소 계	200.	
	김 부 류 식	100.	
	김 망 홍 식	100.	
무 안	소 계	200.	

시군별	품종별	확정	비고
	김 망 홍 식	200.	
영 광	소 계	52.	
	축 제 식	2.	
	김 망 홍 식	50.	
완 도	소 계	807.	
	우 령 쉼 이	6.	'84 증식사업지구 포함
	패 류 축 양	3.	//
	어 류 축 양	8.	//
	김 부 류 식	430.	
	김 망 홍 식	360.	
진 도	소 계	208.	
	패 류 축 양	2.	'84 증식사업지구
	어 류 축 양	6.	
	김 부 류 식	100.	
	김 망 홍 식	100.	
신 안	소 계	243.	
	가 무 락	15.	
	가 리 비	10.	'84 증식사업지구
	우 령 쉼 이	6.	
	패 류 축 양	2.	'84 증식사업지구
	어 류 축 양	8.	
	꽃 게 축 양	1.	'84 증식사업지구
	축 제 식	3.	
	김 부 류 식	100.	
	김 망 홍 식	100.	

'84 공동,정치어장이용개발계획확정

단위 : ha

승인번호	시군별	지선별	어업별		승인		불승인		비고
			종류	명칭	건수	면적	건수	면적	
	계				40	1,594	12	289	
	여수				4	68	-	-	
1		신월	제1종	도수, 나잠	1	10	-	-	
2		경호	"	"	1	30	-	-	
3		"	"	"	1	16	-	-	
4		"	"	"	1	12	-	-	
	순천				1	43	-	-	
1		대대	제1종	도수	1	43	-	-	
	여천				7	58	-	-	
1		돌산, 하동	제1종	도수, 나잠 간권취	1	3	-	-	분쟁조정후처리
2		"	"	"	1	3	-	-	"
3		"	"	"	1	4	-	-	"
4		돌산, 작금	"	"	1	28	-	-	
5		삼산, 초도	"	"	1	2	-	-	특정지역
6		"	"	"	1	10	-	-	"
7		돌산, 금봉	"	"	1	8	-	-	
	장흥				1	55	-	-	
1		관산, 고마	제1종	도수, 나잠	1	55	-	-	수산자원보전 지
	강진				2	100	-	-	
2		칠량, 봉황	제1종	도수	1	50	-	-	

승인번호	시군별	지선별	어업별		승인		불승인		비고
			종류	명칭	건수	면적	건수	면적	
2		도암, 학장	제1종	도수	1	50	-	-	
	해남				4	119	-	-	
1		화산, 삼마	제1종	도수	1	70	-	-	특정지역
2		송지, 어란	//	//	1	4	-	-	//
3		북일, 내동	//	//	1	25	-	-	//
4		//	//	//	1	20	-	-	//
	무안				9	480	1	140	
1		삼향, 왕산	제1종	도수	1	98	-	-	어업권중복 특정지역
-		현경, 오류	//	//	-	-	1	140	
2		현경, 가읍	//	//	1	50	-	-	
3		//	//	//	1	100	-	-	
4		현경, 용정	//	//	1	35	-	-	
5		//	//	//	1	42	-	-	
6		//	//	//	1	25	-	-	
7		//	//	//	1	30	-	-	
8		해제, 유월	//	//	1	43	-	-	
9		해제, 천장	//	//	1	57	-	-	
	함평				3	325	-	-	
1		손불, 학산	제1종	도수	1	45	-	-	특정지역
2		//	//	나잠	1	180	-	-	
3		손불, 석창	//	//	1	100	-	-	
	완도				3	9	5	51	

1		노화, 충도	제 1 종	도수, 나잠	1	3	-	-	특 정 지 역
2		"	"	"	1	3	-	-	"
3		"	"	"	1	3	-	-	"
-		고금, 덕동	"	"	-	-	1	5	어 장 중 복
-		고금, 념도	"	"	-	-	1	20	"
-		완도, 정도	"	"	-	-	1	4	소 멸 어 업 권
-		완도, 중도	"	"	-	-	1	15	"
-		"	"	"	-	-	1	7	"
	진 도				1	100	5	48	
-		조도, 가사도	제 1 종	도수, 나잠 간권취	-	-	1	5	소 멸 어 업 권
-		"	"	"	-	-	1	10	"
-		"	"	"	-	-	1	11	"
-		"	"	"	-	-	1	13	"
-		"	"	"	-	-	1	9	"
1		고군, 금재	"	"	1	100	-	-	특 정 지 역
	신 안				5	237	1	50	
1		장산, 공수	제 1 종	도 수	1	26	-	-	특 정 지 역
2		장산, 팽진	"	"	1	50	-	-	"
3		하의, 신도	"	도수, 나잠	1	117	-	-	"
4		압해, 복용	"	도 수	1	20	-	-	"
5		압해, 대천	"	"	1	24	-	-	"
-		압해, 복용	"	"	-	-	1	50	어 장 중 복

승인번호	시군별	지선별	어업별		승인		불승인		비고
			종류	명칭	건수	면적	건수	면적	
	계				77	2,364	3	87	
	여천				-	-	1	35	
-		화정, 적금	제3종	낭장망	-	-	1	35	어업권소멸
	강진				3	53	-	-	
1		도암, 신기	제3종	건강망	1	25	-	-	
2		신정, 별정	//	삼각망	1	16	-	-	
3		신정, 사초	//	//	1	12	-	-	
	무안				-	-	1	32	
-		해제, 송석	제3종	낭장망	-	-	1	32	세망신규불허
	해남				7	80	-	-	
1		황산, 성산	제3종	호망	1	30	-	-	특정지역
2		화원, 후산	//	//	1	8	-	-	//
3		송지, 갈두	//	//	1	8	-	-	//
4		송지, 통호	//	//	1	8	-	-	//
5		북평, 남성	//	//	1	8	-	-	//
6		문내, 삼정	//	//	1	15	-	-	//
7		화원, 초동	//	//	1	3	-	-	//
	완도				3	28	-	-	
1		약산, 어두	제3종	호망	1	10	-	-	특정지역, 문화재발굴지역
2		약산, 득암	//	//	1	10	-	-	특정지역
3		//	//	//	1	8	-	-	//
	진도				64	2,203	1	20	

1	진 도	군내, 나리	제 3 종	승 망	1	48	-	-	특 정 지 역
2		"	"	건 간 망	1	27	-	-	"
3		"	"	승 망	1	32	-	-	"
4		고군, 벽파	"	"	1	6	-	-	"
5		"	"	남 장 망	1	23	-	-	"
6		"	"	승 망	1	40	-	-	"
7		"	"	남 장 망	1	26	-	-	"
8		고군, 벌포	"	승 망	1	47	-	-	"
9		"	"	남 장 망	1	33	-	-	"
10		고군, 금계	"	형 망	1	43	-	-	"
11		"	"	"	1	49	-	-	"
12		"	"	"	1	48	-	-	"
13		"	"	남 장 망	1	44	-	-	"
14		"	"	"	1	50	-	-	"
15		"	"	"	1	30	-	-	"
16		"	"	삼 각 망	1	28	-	-	"
17		의신, 도목	"	건 간 망	1	39	-	-	"
18		고군, 금계	"	형 망	1	46	-	-	"
19		의신, 도목	"	건 간 망	1	19	-	-	"
20		"	"	"	1	35	-	-	"
21		"	"	승 망	1	25	-	-	"
22		"	"	삼 각 망	1	24	-	-	"

승인번호	시군별	지 선 별	어 업 별		승 인		불 승 인		비 고
			종 류	명 칭	건 수	면 적	건 수	면 적	
23	진 도	의신, 점도	제3종	낭 장 망	1	41	-	-	특 정 지 역
24		"	"	"	1	44	-	-	"
25		"	"	"	1	44	-	-	"
26		"	"	"	1	48	-	-	"
27		"	"	"	1	41	-	-	"
28		임회, 상망	"	승 망	1	42	-	-	"
29		임회, 남동	"	낭 장 망	1	25	-	-	"
30		임회, 팽목	"	"	1	42	-	-	"
31		"	"	"	1	47	-	-	"
32		"	"	"	1	28	-	-	"
33		지산, 가학	"	"	1	25	-	-	"
34		지산, 금노	"	삼 각 망	1	11	-	-	"
35		"	"	낭 장 망	1	38	-	-	"
36		"	"	삼 각 망	1	23	-	-	"
37		"	"	전 간 망	1	26	-	-	"
38		"	"	삼 각 망	1	25	-	-	"
39		지산, 안치	"	승 망	1	25	-	-	"
40		조도, 소상남	"	낭 장 망	1	12	-	-	"
41		조도, 여미	"	"	1	40	-	-	"
42		"	"	"	1	29	-	-	"

43	진 도	조도, 맹성	제3종	낭 장 망	1	39	-	-	특 정 지 역
44		"	"	"	1	42	-	-	"
45		"	"	"	1	47	-	-	"
46		"	"	"	1	47	-	-	"
47		조도, 창유	"	승 망	1	31	-	-	"
48		"	"	낭 장 망	1	48	-	-	"
49		조도, 신육	"	"	1	42	-	-	"
50		조도, 신전	"	"	1	44	-	-	"
51		조도, 읍구	"	"	1	38	-	-	"
52		조도, 관매	"	"	1	47	-	-	"
53		"	"	"	1	33	-	-	"
54		조도, 창동도	"	"	1	46	-	-	"
55		조도, 관사도	"	승 망	1	28	-	-	"
56		조도, 나베도	"	"	1	44	-	-	"
57		조도, 모도	"	낭 장 망	1	44	-	-	"
58		조도, 대마도	"	"	1	12	-	-	"
59		"	"	"	1	48	-	-	"
60		의신, 초도	"	삼 각 망	1	20	-	-	"
61		"	"	"	1	10	-	-	"
62		의신, 접도	"	건 간 망	1	37	-	-	"
63		지산, 안치	"	삼 각 망	1	25	-	-	"
64		지산, 거제	"	"	1	13	-	-	"
-		군내, 녹천	"	낭 장 망	-	-	1	20	소 멸 어 업권

전라남도 공고 제 56 호

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 (시설) 을 일부 변경하였기 동시행규칙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하여
공고함.

1984. 2. 27.

전라남도지사

1. 작업장명 : 별교 특별도축장 (보경물산합자회사)
2. 소재지 : 보성군 별교읍 장좌리 531 - 1
3. 대표자 : 김 희 창
4. 시설변경 허가내용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박 피 기		1 대	신 설
우 족 탈 모 기		1 대	"
폐 수 저 유 조		10 평	신 축
탈 모 기	1 대	△ 1	철 거

이웃돕기 성금 및 수해의연금 결산서

'83.12.31. 현재
(단위 : 천원)

1. 접수 상황

기탁자 성질별	계	전년 이월액	기업체	각급기관	단체	개인	기타 (이자)
계	1,071,867	745,743	165	323,321	633	1,821	184
이웃돕기 성금	652,021	345,181	165	304,037	633	1,821	184
수해 의연금	214,552	195,268		19,284			
어린이공원 조성성금	205,294	205,294					

'83.12.31. 현재
(단위 : 천원)

2. 집행 상황

수혜자 성질별	계	사회 복지 시설	일 요보호 집단	생 활 대 상 자	재 해 이 재 민	기 타	잔 액	비 고
계	648,508	341,655	42,781	18,598	37,519	207,955	423,359	
이웃돕기 성금	408,245	341,655	42,781	18,598	2,550	2,661	243,776	
수해 의연금	34,969				34,969		179,583	
어 린 이 공 원 조 성 성 금	205,294					205,294	0	

전라남도 도보 제 1593 호 (84. 2. 13.) 에 게재된 전라남도 훈련 제 638 호 “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중 개정”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.

1984. 2. 27.

전 라 남 도 지 사

오	정
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. 1984. 2. 25. 전 라 남 도 지 사	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. 1984. 2. 15. 전 라 남 도 지 사

사 령

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 통지함.

성 명	임 용 사 항				현 직		
	부 서	직 위	직 급	호봉	부 서	직 위	직 급
심동수	도 로 관 리 사 업 소	보수과장	지 방 토목기과	22	지 방 공 무 원 교 육 원	교 관	지 방 토목기과
이복우	전라남도전입 지방공무원 교육원	교 관	//	18	광 양 군	건설과장	//
김승지	도 로 관 리 사 업 소	포장계 장	지 방 토목기사	19	건설국도로과		토목기사
문열상	건설국도로과		토목기사	16	농림국농지과		지 방 토목기사
김정수	전라남도전입 도로관리 사업소	토 목 시험계 장	지 방 토목기사	21	여 천 군	건설과장 직무대리	//
김선만	건설국도시과		//	19	건설국치수과		//
문두식	건설국치수과		//	21	기 획 관 리 실 기획담당관실		//
김창호	기 획 관 리 실 감사담당관실		//	14	보 건 사 회 국 환경 위 생 과		//
유종대	건설국도시과		지 방 토목 기사보	12	기 획 관 리 실 감사담당관실		지 방 토목기사보
신영술	무안군 전출			20	내 무 국 새마을지도과		지 방 토목기사

위계평	목포시 전출			16	건설국도시과		지 방 토목기사
김봉수	진도군 전출			21	도 로 관 리 사 업 소	포장계장	//

1984. 2. 20.

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 통지함.

성 명	신 임				현 임				비 고
	부 서	직 위	직 급	호 봉	부 서	직 위	직 급	호 봉	
한갑수	농민교육원		지 방별정 7 급상당	3		신 규			
이동구	//			3		신 규			
			이	하	여	백			

1984. 2. 27.

전 라 남 도 지 사